

대구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1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주식회사

특별대리인 변호사 D

변론 종결 2020. 7. 9

판결 선고 2020.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5. 20.접수 제97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5. 20.접수 제9793호,같은 날 접수 제9795호,같은 날 접수 제979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모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19. 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5. 20. 접수 제9786호로채권최고액 3,900만원,채무자 F,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19. 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5. 20. 접수 제9793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E으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1997. 5. 19. 계약을 원인으로 대구 지방법원 칠곡 등기소1997. 5. 20. 접수 제9795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원,채무자 H,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1997. 5. 19. 계약을 원인으로 대구 지방법원 칠곡 등기소 1997.5. 20. 접수 제9797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에관한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피고는 1999. 12. 20.회사합병을 원인으로 2000. 2. 2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A은 2008. 8. 13. 파산선고를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8하합18호), 원고는 같은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1997. 5. 20. 등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은 대여금채권이고,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997. 5. 19.에 체결되었으므로,위 시기를 기준으로 위 각 대여금채권은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각근저당권은 피보담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판사 이호선판사 김정섭

별지